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최은순/변호사 www.womenlaw.co.kr

갑 순이와 갑둘이는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갑둘이는 결혼 초부터 늘 술만 마시면 갑순이를 극타하여 못살게 굴고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고 부숴줍니다. 자식도 없고, 술이 깨고 나면 잘못을 빌곤해서 갑순이는 여태껏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갑순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더니 갑순이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으므로 갑순이가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할 뿐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갑순이는 가정주부이기는 하지만 10년 동안 자식키우고 뒷바라지 한 게 이 정도인가 싶어 억울해 법에 호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갑둘이 주장대로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요?

이 령듯 이혼얘기가 나오면 몸만 나가라고 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느냐가 아니라 이혼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냐에 따라서 그 책임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부부의 혼인파탄 사유가 남편의 폭행에 있으므로 갑순이는 남편인 갑둘이를 상대로 이혼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원인이 된 남편의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즉, '이혼사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책임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피해자인 배우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시에는 이혼사유, 당사자의

잘못 정도, 재산상태나 생활정도, 동거기간, 당사자의 학력·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의 양육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현행민법(1991. 1. 1.시행)하에서의 위자료 산정실무는 현행민법이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종전에 위자료에서 재산분할적 요소를 감안해 오던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요소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자료 액수 자체는 종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자료 액수는 많아야 5,000만원선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자료액수 산정시 위 요소 중 혼인기간과 상대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을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외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재산분할제도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안에서 갑순이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녀양육을 원할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지정을 자신으로 해달라는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혼소송 전에 남편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판결선고시까지 남편재산을 보전토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보전소송을 하지 않아 갑둘이가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민사적으로는 이를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PPFK